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(중단)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‘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(중단)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’을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8. 6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(중단)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
2. 근 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, 제29조제1항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주 소
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 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정○우	02. 3. 12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(중단)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중단)	지정된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음 (출석 통지 2회 이상 불응)	○ 취업지원 종료(중단)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32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 8. 6. ~ 2026. 8. 20. (15일간)
5. 기타 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복지+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조은화(Tel. 031-412-66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